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6, 4(4), 7~11
https://doi.org/10.15268/ksim.2016.4.4.007
ISSN 2288-1174(Print)
ISSN 2383-9651(Online)

보건교육사 직무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김민경[1] · 신경애[1] · 류황건[2‡]
[1]동주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과, [2‡]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Role and the Operating Qualification System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Kim Minkyung, MPH[1] · Shin Kyeongae, Ph.D[1] · Ryu Hwanggun, Ph.D[2‡]
[1]Dept,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Dongju College
[2‡]Dept,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Kos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suggest a recommendation of the role and the operating qualification system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Method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aw and descriptive literature review on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Result :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Law and the relevant literature.

Conclusion :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uggestions below to research a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qualifications and duties and role-specific factors based on the content of legislation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Key Words : health education specialist, health education, qualification of health education specialist.

‡교신저자 :
류황건 ryuhg@kosin.ac.kr

논문접수일 : 2016년 8월 31일 | 수정일 : 2016년 10월 27일 | 게재승인일 : 2016년 12월 12일
※ 이 연구는 동주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Ⅰ. 서 론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6). 보건교육사는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업무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Green 등(1999)은 건강에 대한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태도, 행동, 기술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적 접근을 보건교육이라 명시하였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교육을 일차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서비스로 명시하며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주장하였다(Mckenzie 등, 2001).

국민건강증진법 12조 2항에서는 보건교육사를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17조에서는 금연 및 절주, 만성퇴행성질환,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교육의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와 직무가 원활하게 정착된 미국의 경우, 자격제도와 시험, 직무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보건교육사인증협의회(NCHEC, National Commission for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CHES(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를 배출하고 있기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Aeree 등, 2010; National Commission for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 Inc., 2016).

미국의 경우 보건교육과 보건교육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보건교육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며,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2010년 국가 자격시험으로 신설된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취득을 한 경우에도 직무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유용성도 높지 않다. 국가의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조차 요구도 조사를 통한 사업 실시가 아닌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건교육사의 취업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시작 전에 논의된 보건교육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와 보건교육사의 역할, 기능, 활동영역, 능력개발을 다룬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및 역할 관련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육사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보건교육사들의 경험, 인식 등에 대한 해석과(이주열, 2010; 박정운, 2012)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와 보건교육사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법령 및 문헌 고찰을 통해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와 보건교육사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원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 건강증진 관련 법령의 내용은 법 제2조, 제12조, 제19조 등이며 이는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 접속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로 검색되는 학위논문 4개, 국내학술지논문 10개와 보건교육사 직무 검색되는 학위논문 3개, 국내학술지논문 4개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국가 자격시험으로 보건교육사 시험이 신설되어 2015년 12월까지 제 7회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 국민건강증진법 재정 등 건강증진시대의 도래로 인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여(김광기 등, 2008; 남철현, 2010) 현재까지 1급 4명, 2급 182명, 3급 9,3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 2016). 그러나 합격자들의 직무, 자격시험의 유용성,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재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법 원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보건교육의 정의 및 영역, 건강증진 사업 영역, 보건교육사 시험관련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채용 관련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 체계나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포괄적인 규정 대신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 보완과(김광기 등, 2008) 자격제도 및 직무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보건교육사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낮은 인지도, 진로의 불확실성, 자격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운 경험,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의 부재로 경험 부족에 대한 자격 요건 보완 및 실무교육 훈련 강화를 지적하면서 다른 보건의료인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보건교육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박정운, 2012).

건강증진 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보건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사 역할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사업 기획 시 지역사회 진단이 아닌 현실적 이유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요구도 진단, 보건교육의 기획, 평가 및 연구 등의 부분에서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최승희 등, 2014).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목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도 현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교육사 등급별, 등급내 일부 국가시험 과목들의 유사문제 출제 경향과 보건교육사의 직무와 국가시험과목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내용을 지적하였다(김명, 2013).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험 문항 수, 형태, 시간, 운영방법 등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며 향후 현행 건강증진사업 개선, 발전에 '보건교육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광기 등, 2008; 김명, 2013).

미국의 CHES의 경우 보건교육사로서 학문적 자격 충족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공적 역량 강화와 국가 자격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자격시험과 직무 등에 대한 학회차원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National Commission for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 Inc., 2016).

보건교육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에서 학회 차원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각 분야별로 시도했으나 자격시험 실시 후 학회 차원의 연구나 직무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김영복, 2010; 오영아 등, 2010; 이주열, 2010; 남은우 등, 2010; 남철현, 2010). 대한민국 국가고시의 경우 자격 취득 시 바로 직무로 연결이 되나 보건교육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직무로의 연계가 어렵고, 자격증의 유용성 및 인지도가 낮아 현 시점에서 자격제도 및 직무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1.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원문 내용

법, 시행령	원문 내용
법 제2조 제2항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6.3.2.]
법 제12조의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법 제12조의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09.29.]
법 제19조의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table>
<tr><td></td><td>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td></tr>
<tr><td>시행령 제17조</td><td>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td></tr>
<tr><td>시행령 제18조 제1항</td><td>법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5.] <별표 2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table><tr><th>등급</th><th>자격기준</th></tr><tr><td>보건교육사 1급</td><td>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td></tr><tr><td>보건교육사 2급</td><td>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td></tr><tr><td>보건교육사 3급</td><td>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td></tr></table></td></tr>
</table>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법령 및 문헌고찰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와 보건교육사 직무 및 역할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건, 간호, 영양 등의 다학제적인 전공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내용 정립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격제도와 진로의 연계를 위한 여건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오영아 등, 2010).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 검증 관련 기초 교과목과 현장에서의 보건교육 실무능력 검증 관련 실무 교과목으로 나누어 출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김명, 2013).

둘째, 자격시험에 대한 계속되는 검토를 통해 유사문제 출제 경향 및 직무와 국가시험과목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실시되는 제 8회 시험부터 문항수, 출제범위, 시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6).

셋째, 자격증 취득 후 배출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12조 2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조 4항의 보건교육사 채용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장은 보건교육사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활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교육사의 직무, 업무 영역, 역할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며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질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광기 등, 2008; 오영아 등, 2010). 현재와 같이 보건소 중심이 아닌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 관련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과 활용 방안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광기 등, 2008). 보건교육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과 기존 인력이 아닌 자격을 취득한 보건교육사가 특화된 전문인력으로서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마련,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체계 마련, 보수교육 관리 활성화 방안, 윤리강령 개발과 적용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김광기 등, 2008; 최승희 등, 2014).

넷째, 국내 뿐 아니라 전염병 증가, 질병 양상 변화, 빈곤, 건강불평등 해소 등 보건의료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위해 새로운 보건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시험 실시와 함께 세계보건기구나 국제협력단, NGO 등으로 보건교육사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국제화, 국제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보건교육사 제도 및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남은우 등, 2010).

향후 연구에서 보건교육사 제도가 잘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CHES의 경우와 같이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한 자격제도와 직무 및 역할 관련 연구와 인식의 제고, 보수교육 체계 마련 및 국제화 관련 새로운 보건교육 전략 등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광기, 김건엽, 김영복 등(2008). 보건교육사 제도정립의 방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2), 73-89.

김명(2013).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목 타당성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영복(2010).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교육사의 활동 영역과 능력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37-48.

남은우, 천성수(2010). 국제화와 보건교육사의 활동영역.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49-57.

남철현(2010). 보건교육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1-15.

박정운(2012). 신규 보건교육사들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아, 이주열(2010). 보건교육사의 질 관리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59-67.

이주열(2010). 공공부문에서 보건교육사의 활동 영역과 능력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2), 17-21.

최승희, 김명(2014).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으로서 보건교육사 역할의 우선 순위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5), 121-133.

Aeree S, Jamie B(2010). The United States CHES program: The role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health educator.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Korean J Health Educ Promotion, 27(5), 63-71.

Green LW, Kreuter MW(1999). Health promotion planning-An educational and ecological approach. 3rd ed, New York, Mayfield Publishing.

McKenzie JF, Smeltzer JL(2001).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3rd ed, Allyn and Bacon Publication, MA.

http://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http://www.kuksiwo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6.

http://www.nchec.org/ches National Commission for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 Inc, 2016.